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2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

2. 주요 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안 II.)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일부(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서, 시행령 제4조의4 각호의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보상 대상으로 함
- 손실보상금의 산정(안 III.)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100%)을 모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별 손실보상금으로 하고,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기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손실보상금 지급절차(안 IV.)
 -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거쳐 손실보상을 신청하도록 함
- 손실보상금의 정산 및 환수(안 V.)
 - ▲시행령상 환수 사유에 해당하면 감액·미지급 또는 환수, ▲'21.3분기 정산 대상자 또는 '22.1분기까지 先지급받은 대상자의 경우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2년 6월 2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sscompensatio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3) 팩스 : 044-204-784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TF(전화 : 044 - 204 - 7827, 7542, 76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정(안) 전문 1부. 끝.